

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우리G 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_파생형]

2. 효력발생일 : 2022.03.24.(목)

3. 변경 사유 :

-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
- 종류 F, 종류 I1, I2 수익증권 가입자격 금액 변경
- (간이)투자설명서 표기 변경 (오후 15시30분→오후3시30분)
- '21.10.2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(대차대조표→재무상태표)

▣간이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'21.10.21 자본시장법 개정 따른 용어 변경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표기 변경	오후 15 시 30 분	오후 3 시 30 분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1.08.31 기준	2022.01.28 기준
투자실적추이	2021.09.10 기준	2022.03.07 기준
운용전문인력	2021.09.10 기준	2022.03.02 기준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- I(고액) I1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50 억 원 - 100 억원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 I2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 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. 집합투자기구 2. 특정금전신탁 3. 외국환거래규정 제 1-2 조에 따른 기관투자가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 하는 자를 포함) 및 국가 재정법에 의 한 기금 4.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 억 이상인 법인	- I(고액) I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30 억원인 미만인 경우 I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 인 경우 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. 집합투자기구 2. 외국환거래규정 제 1-2 조에 따른 기관투자가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 하는 자를 포함) 3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인 경우 4.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 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 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

▣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'21.10.2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오기 수정	오후 15 시 30 분	오후 3 시 30 분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1.08.31 기준	2022.01.28 기준
투자실적추이	2021.09.10 기준	2022.03.07 기준
운용전문인력	2021.03.02 기준	2022.03.02 기준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- I(고액) I1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50 억원 - 100 억원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 I2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 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. 집합투자기구 2. 특정금전신탁 3. 외국환거래규정 제 1-2 조에 따른 기관투자가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및 국가 재정법에 의한 기금 4.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 억 이상인 법인	- I(고액) I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30 억원인 미만인 경우 I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경우 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. 집합투자기구 2. 외국환거래규정 제 1-2 조에 따른 기관투자가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3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 4.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가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
제2부.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추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운용전문인력	2021.09.10 기준	2022.03.02 기준
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종류형 구조 - 가입자격	- C(I)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 원 이상부터 100 억 미만인 경우 - C(I)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0 억 원 이상인 경우 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. 집합투자기구 2. 특정금전신탁	- C(I)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 억 원 이상 30 억원인 미만인 경우 - C(I)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30 억 원 이상인 경우 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. 집합투자기구

	<p>3. 외국환거래규정 제 1-2 조에 따른 기관투자가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및 국가 재정법에 의한 기금</p> <p>4.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 억 이상인 법인</p>	<p>2. 외국환거래규정 제 1-2 조에 따른 기관투자가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p> <p>3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4.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</p>
<p>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다.모자형 구조</p> 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]</p> <p>가.운용전문인력</p>	2021.09.10 기준	2022.03.02 기준
<p>10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라.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21.74%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 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</p>	<p>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21.42%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 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</p>
<p>11.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</p> <p>가격 적용 기준</p> <p>가.매입</p> <p>(2)종류별 가입자격</p>	<p>- C(I)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부터 100 억 미만인 경우</p> <p>- C(I)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기구 2. 특정금전신탁 3. 외국환거래규정 제 1-2 조에 따른 기관투자가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및 국가 재정법에 의한 기금 4.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 억 이상인 법인 	<p>- C(I)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30 억원인 미만인 경우</p> <p>- C(I)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기구 2. 외국환거래규정 제 1-2 조에 따른 기관투자가 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3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 4.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
<p>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</p> <p>가.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</p>	<p>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</p>	<p>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</p>

	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2021.03.07 기준	2022.03.07 기준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재무정보 2.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3 기(2021.03.07) 기준	제 14 기(2022.03.07) 기준
제4부.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2020.12.31 기준	2021.12.31 기준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운용자산 규모	2021.09.10 기준	2022.03.02 기준

■규약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3 조 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3. <생략></p> <p>4. Class C(F) 수익증권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가. 집합투자기구</p> <p>나. 특정금전신탁</p> <p>다. 외국환거래규정제1-2조제4호에 따른 기관 투자자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국가 재정법에 의한 기금</p> <p>라.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억 이상인 법인</p>	<p>①~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3. <현행과 동일></p> <p>4. Class C(F) 수익증권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가. 집합투자기구</p> <p>나. <삭제></p> <p>다. 외국환거래규정제1-2조제4호에 따른 기관 투자자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</p> <p>라. 투자자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마.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</p>

	<p>마. <신설></p> <p>5. <생략></p> <p>6. Class C(l)1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투자자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p> <p>7. Class C(l)2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p> <p>8.~15. <생략></p> <p>④ <생략></p>	<p>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</p> <p>5. <현행과 동일></p> <p>6. Class C(l)1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투자자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p> <p>7. Class C(l)2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투자자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p> <p>8.~15. <현행과 동일></p> <p>④ <현행과 동일></p>
제 30 조 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.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공고.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~④ <생략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~④ <현행과 동일></p>
제 32 조 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대차대조표</p> <p>2.손익계산서</p> <p>3.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②~③ <생략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재무상태표</p> <p>2.손익계산서</p> <p>3.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②~③ <현행과 동일></p>
제 39 조 (보수)	<p>① <생략>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</p>	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</p>

<p>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보수계산기간의 종료</p> <p>2.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</p> <p>3.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 <p>③ <생략></p>	<p>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보수계산기간의 종료</p> <p>2.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</p> <p>3.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 <p>③ <현행과 동일></p>
--	--